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

I. 법, 어떻게 이해할까

1. 법의 필요성 - 만약 법이 없다면?

- (1) 사람들 사이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없을 것
- 분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, 이런 과정에서 충돌 이 발생한다.
- 충돌은 반드시 고의적인 것만은 아니고, 많은 경우 서로 다른 관행이나 계약에 대한 해석이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문구가 확실하지 않아서 생기기도 한다.
- (2)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때 이를 규율할 수 없을 것

2. 법률

- (1) 법과 법률
- ① 법률은 법규범의 하나이다.
- 법에는 법률 외에도 명령, 규칙, 조례 등이 있고, 불문법인 관습법, 판례법 등도 법을 구성 한다. 따라서 법은 법률 이상의 규범이다.
- ②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다.
- 명령이 대통령이나 행정각부 즉 정부가 제정한 것인 반면,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다.
- 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민의 자유, 재산, 생명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공권력의 행사요건을 규정한 '법률'을 제정하는 것이다.
- (2) 성문법과 불문법
- 1) 성문법
-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·공포한 법을 말한다.
- 법규범의 성문화 → 고정성 → 사회 사정의 신속 적응 어려움(단점)
- 참고)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서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있고, 하위에 구체적

=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= 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 입법으로 시행규칙이 있다.

2) 불문법

- 문장으로 표현된 제정법이 아니고 실제 관행으로 존재하는 법원을 의미한다.

① 관습법

- 사회생활 속에서 관습이 반복하여 행하여져서 일반인이 법적 확신 내지 인식을 가짐으로 써 법적 가치를 얻는 불문형식의 법이다.

② 판례법

-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불문의 규범을 의미한다.
- 법원의 판결 자체가 판례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, 법원의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 보서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불문법이다.

(3) 일반법과 특별법

- 법의 효력범위가 일반적·보편적 사항에 대한 것인가, 특수한 부분인가를 기준으로 법을 분류하는 것이다.

① 일반법

- 사람, 사항, 장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고 적용되는 법

② 특별법

- 특수적인 좁은 사항에 국한된 효력범위를 갖는 법
- ※ 법을 적용하는 순위에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
- → "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."
- → 민법은 민사에 관한 일반법이고, 상법은 민사 중 특히 상사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민 사에 관한 특별법이 되는 것이다.

(참고)

- * 원고 v. 피고
- * 고소 v. 고발
- * 배상 v. 보상

=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=

3. 법의 효력

(1) 법의 시간적 효력

1) 법의 시행

- 법은 시행에 앞서 '공포'를 한다. 공포는 법의 성립과 그 내용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다.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, 법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기간은 '법의 주지기간'으로, 법에 따라서는 따로 시행일을 정하기 도 한다.

2) 법률불소급의 원칙

- 법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적용하지 않고,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.
- 예. 형법 제1조 제1항 "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"

(2) 법의 장소적 효력

1) 속지주의

-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

2) 속인주의

- 범죄지가 어디인지 여부를 불구하고(외국에서의 행위라도)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 라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

3) 보호주의

- 범죄지와 범죄인의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
- ** 우리나라 현행법은 속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. 속지주의만을 고집하면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, 속지주의 원칙을 보충하기 위해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한다.

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

Ⅱ. 우리나라의 법제도

1. 우리 법의 계통

(1) 대륙법계

- 독일,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 생성, 발달한 법계통
- 성문법주의
- (장점) 조직적, 논리적 (단점) 사회변화에 신속 대응 못함

(2) 영미법계

-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법계통
- 판례법주의
- 배심재판제도

<< 국민참여재판 >>

- 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8495호)에 따라 2008. 1. 1.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
-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·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 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
- 1심 형사재판 중 일부 법정 요건 충족의 경우
-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,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,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,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
- 배심원의 자격 -->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,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음.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, 변호사,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음.
- 배심원선정 :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 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 일을 통지

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

2. 법조문 읽기

- 법조문의 체계 : 조, 항, 호
- ① 조, 항 : 제1조 제1항 / §1① 예) 제2조[신의성실]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

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.

- ② 호 : 제1조 제3호 / 제1조 제1항 제3호
- 예) 제118조 [대리권의 범위]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수 있다.
- 1. 보존행위
- 2.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
- ③ 제0조의2
 - 예) 제826조의2 [성년의제]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.
- ④ 본문 / 단서
- 예) 제5조 (미성년자의 능력)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제1문 / 제2문
- 예) 제128조 (임의대리의 종료)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.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.

[판결번호 이해하기]

- 판결내린 곳의 이름 / 판결일 / 사건번호 예) 대법원 2020. 2. 1. 선고 2019다2797 판결
- 사건번호 : 연도, 사건종류, 접수번호 위 예는 2019년 접수된 / 민사사건 / 2797번째 접수 사건